

울산광역시 동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제1673호 2026. 6. 11.(목)

고 시

○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 1

공 고

○ 하천법 위반(불법점용)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

안

내

- 동구 전자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(정기)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수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동구 전자공보 확인방법
☞ 동구 홈페이지(www.donggu.ulsan.kr) → 동구소식 → 고시/공고 → 동구공보

회
람

발행 : 울산광역시 동구

편집 : 기획예산실(☎ 209-3047, 행정 3047)

울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6 - 50호

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. 6. 11.

울산광역시 동구청장

□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내역

연번	신청인		허가 번호	위치	선명/ 점용면적(㎡)	사용목적	점용기간	비고
	주소	성명						
1	방어진 순환도로 1000 (전하동)	에이치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상 균	2026-04	N 35-32-30 E129-29-42	"AL NIGYAN" / 55,494.4	신조선박 외항계류	2026.06.10. ~ 2026.06.29. (20일간)	
2			2026-05	N 35-31-36 E129-29-42	"HALWAN" / 55,494.4		2026.06.11. ~ 2026.07.09. (29일간)	

□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내역

피허가자		허가 번호	점용장소 / 면적(㎡)	점용목적	변경사항			비고
주소	성명				구분	당초	변경	
울산 남구 변영로 124번길 (달동)	반딧불이에너지(주) 대표이사 비윤잉게브라텐	2025-15	방어동 948-2지선 동측 14km~21km 해역 / 18,755.1	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지반조사	기간 단축	2023.12.29. ~ 2026.12.28.	2023.12.29. ~ 2026.05.28.	사업 취소

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- 593호

하천법 위반(불법점용)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

하천구역 내 「소하천정비법」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「소하천정비법」 제17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 제1항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를 실시하였고 원상회복 의무자가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않아,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 제2항에 따른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,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8일

울산광역시 동구청장

1. 공 고 명: 하천법 위반(불법점용)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: 2026. 6. 8. ~ 6. 22.(14일간)
3. 공고방법: 홈페이지 및 게시판
4. 법적근거: 소하천정비법 제14조·제17조·제27조, 행정대집행법 제3조, 행정절차법 제14조
5. 공고대상 및 내용

하천 구분	위 치	행위자	불법점용물	처분내용	대집행 방법	관련법
서부천	서부동 955-39	미상	불법경작 30개소	불법 점용물 자진 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에 따른 행정대집행	철거	소하천정비법

6. 기타사항

가. 「소하천정비법」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유수의 흐름을 현저히 방해하는 점용물을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「소하천정비법」 제17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 제1항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자가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,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에 따라 대집행함을 통보합니다. 그리고 대집행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,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다. 공고기간 경과 후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봄을 알려드립니다.

6. 문의처: 울산광역시 동구청 건설과(☎ 052-209-3654)

■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5.11.18.>

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-593호

행정대집행 영장

성명 : 미상

주소 : 미상

2026년 3월 31일부터 울산광역시 동구 건설과-11512(2026. 3. 31.), 14894(2026. 4. 21.), 울산광역시 동구청 공고 제2026-338호, 제2026-524호로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였으나, 지정된 최종기한(26. 6. 5.)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구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.

※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※ 아래 대집행 일정은 기상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- 아 래 -

대집행 일시	행정대집행 책임자			행정대집행 비용(추산액)
	소속	직위(직급)	성명	
2026년 6월 23일 ~ 6월 30일 (기간 중 2일)	건설과	하수관리팀장	김태형	대집행 후 징수 (소요비용 추후 부과)

2026년 6월 8일

울산광역시 동구청장

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